

# 규제혁신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시직\*

## I. 들어가며

지난 9월 20일, 소위 “규제혁신 5법”<sup>1)</sup> 중 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률안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각 해당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융합 촉진법) 및 6개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반의 융복합이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법·제도를 뛰어넘는 다양한 새로운 융합서비스 및 제품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적기에 출시하지 못하거나 사장(死藏)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신기술혁신이 가져올 4차산업혁명을 선제적으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 연구원, (043)531-4357, potential47@kisdi.re.kr

1) 여기서 “규제혁신 5법”이란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을 말하며, 이 밖에도 유사한 취지로 발의된 법률안으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안’,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 등이 있다.

로 대응하고 신규 융합 기술·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사업화 또는 시장출시가 지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규제 시스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 '규제혁신3법' 중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우선허용·사후규제'를 대원칙으로 천명하고, 사업자가 새롭게 개발한 기술·서비스에 대하여 허가등의 필요 여부와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신속처리' 제도,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사업화가 지체되는 경우 신속히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임시허가' 제도를 그리고 해당 기술·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을 위하여 제한적 범위 내에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의 개선 및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법률에서의 개정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개정 '정보통신융합법'의 제안경위

정보통신융합법은 총 5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중, 송희경 의원의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003839)과 김성태 의원의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006090)은 2017년 9월 21일에 개최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신경민 의원의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010081)은 2018년 2월 2일에 개최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각각 상정된 후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신경민 의원의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012348)와 추경호 의원의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014902)은 2018년 8월 23일에 개최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다.

해당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 5건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병합심사를

통해 5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2018년 9월 20일에 개최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였다.

〈표 1〉 정보통신융합법 발의현황 및 의결결과

	의안번호	대표발의자(소속정당)	제안일자	의결결과
1	2003839	송희경의원(자유한국당)	2016.11.24.	대안반영폐기
2	2006090	김성태의원(자유한국당)	2017.3.9.	대안반영폐기
3	2010081	신경민의원(더불어민주당)	2017.11.8.	대안반영폐기
4	2012348	신경민의원(더불어민주당)	2018.3.7.	대안반영폐기
5	2014902	추경호의원(자유한국당)	2018.8.16.	대안반영폐기
대안	20157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18.9.20.	원안가결

### Ⅲ. 개정 ‘정보통신융합법’의 주요내용 및 분석

#### 1.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선언

개정 정보통신융합법(제3조의2)에서는 신산업의 시장출시를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는 이른바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을 대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危害)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은 허용된다.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신기술·서비스와 관련된 소관 법령 및 제도가 위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심의위원회 신설

개정 정보통신융합법(제10조의2)에서는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20명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된다. 특히, 위원장은 해당 기술·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심의과정에 참여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신속처리 제도 개선

개정 정보통신융합법(제36조)에서는 기존 '신속처리'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되, 신속처리와 임시허가 제도를 분리하여 사업자가 별도의 신청요건 없이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기술·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필요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처리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신속처리 신청사실 및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한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만약 해당 기술·서비스가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술·서비스의 본허가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도 함께 회신하여야 한다.

#### 4. 일괄처리 제도 도입

개정 정보통신융합법(제36조의2)에서는 사업자가 해당 기술·서비스에 2개 이상의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신속처리 신청을 통해 해당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회신을 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5. 임시허가 제도 개선

개정 정보통신융합법(제37조)에서는 신속처리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시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 유입경로를 확대하고, 임시허가 신청에 따른 신기술·서비스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규정하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한편, 손해발생 시 입증책임을 전환하도록 하는 등 기존 임시허가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는 ①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②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 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나아가 사업자가 직접 소관 부처에 해당 기술·서비스의 본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기술·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이 없어 허가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계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요청하도록 규정하여 임시허가 유입경로를 확대하였다.

임시허가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 대상이 되는 기술·서비스의 관계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참여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 위원회(제10조의2 신설)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나아가 해당 기술·서비스의 임시허가 심사절차에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여 임시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전에 해당 기술·서비스의 본허가를 위한 관계법령이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기간을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본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해당 기술·서비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 도입

개정 정보통신융합법(제38조의2)에서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신설하였다. 신설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실증사업자가 ①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②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하여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실증사업자로부터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검토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회신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임시허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나아가 제38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감독)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실증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의 지정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계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령정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하거나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IV. 결론 및 시사점

현 정부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으로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파’를 핵심 과제로 선정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크게는 ‘입법방식의 전환’과 ‘혁신제도(규제샌드박스)의 도입’을 두 축으로하는 이른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소위 ‘규제혁신 3법’은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결과물로서, 본 ‘규제혁신 3법’의 개정을 통해 정부입장에서는 신산업 육성 정책의 성과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을 과감히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기업입장에서는 글로벌 혁신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뿐 아니라 규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유·무형의 비용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다양한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과 후생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 정보통신융합법의 내용적 측면으로는 첫째, ‘규제의 신속처리’,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대한 신청자의 범위를 해당 기술·서비스를 ‘개발한 자’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로 확대·신설하였다.

〈표2〉 개정 정보통신융합법의 주요내용 분석

심의위원회	명칭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주요기능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신속처리	신청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하려는 자
	신청요건	별도요건 없음
	신청내용	해당 사업에 대한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확인
일괄처리	신청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하려는 자
	신청요건	해당 사업에 2개 시양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임시허가	신청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
	신청요건	①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② 허가등의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유효기간	2년 이하
	연장횟수(사유)	1회(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법령정비 의무화	법령정비 노력의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
	신청요건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유효기간	2년 이하
	연장횟수(사유)	1회(별도사유 없음)
	법령정비 의무화	법령정비 노력의무



둘째,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다. 특히, 신기술·심의위원회는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심의과정에서 해당 기술·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각 소관부처가 유효기간 내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당위성을 부여하였다.

셋째, 기존 신속처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요건 없이 신속처리 제도를 통해 해당 기술·서비스와 관련된 규제사항을 신속히 확인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자유출시, 본허가,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어떠한 경로를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기존 임시허가 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업자는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한 근거법령상 기준·규격·요건 등이 미비하여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임시허가 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기술·서비스를 신속히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또한 임시허가 기간 내 해당 기술·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나아가 소관부처가 임시허가 유효기간 내에 해당 법령을 정비(노력)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해당 기술·서비스의 사업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실증의 위한 규제특례 제도의 신설을 통해 실증사업자는 해당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을 위한 근거법령상 기준·규격·요건 등이 미비하여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 본 제도를 통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받지 않고 2년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살펴본 정보통신융합법을 포함한 개정 '규제혁신법'에 각각 도입된 규제의 신속(처리)확인,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 등은 당정청 간의 협의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로 각각의 규제혁신법에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들의 구성·체계 및 세부적인 사항들이 일부 상이한 내용으로 각각의 법률에 반영되면서 본 제도들을 이용하려는 수범자로 하여금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혁신법 시행에 따른 수범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각 개정 법률에 포함된 각각의 제도들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활용·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규범의 제·개정, 가이드라인의 제작·배포 등을 통해 행정철자 및 집행에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본 제도들을 부담없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산업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